

캘리포니아는 이민자의 민권을 보호합니다



Civil Rights
Department
STATE OF CALIFORNIA

안내 자료

민권 부서(CRD)은 캘리포니아의 민권 기관입니다. CRD는 편견에 기반한 폭력과 인신매매뿐만 아니라, 고용, 주택, 상업 시설, 주정부 지원 프로그램 및 활동 내 차별과 괴롭힘에 대해 주의 강력한 법을 집행합니다. CRD는 이민 상태에 상관없이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이 차별받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용

인종, 종족, 혈통, 출신 국가, 성별, 성적 성향, 정체성, 장애, 종교, 나이(40 세 이상) 및 기타 특성에 의해 직업을 잃거나,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거나, 같은 직장에서 동료에 비해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그 외 기타 유형의 차별을 당하는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민 상태, 시민권 및 언어와 관련된 특정 보호 제도가 있습니다.

불법 차별 예시:

- 출신 국가/혈통. “우리가 동일한 일을 하고 더 경험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 고용주가 특정 국가 출신(또는 특정 혈통) 근로자를 미국 출신 근로자에 비해 부당하게 대우하고 있어요.”
- 괴롭힘. “제 동료가 이민자와 제가 태어난 국가에서 온 사람들에 대해 주기적으로 경멸적인 언사를 해요. 이에 대해 제 고용주는 그만하게 하려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고 있어요.”

- 영어 외 언어 제한. “고용주가 휴식 중에도 영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했어요. 업무 중에는 이 규칙에 대한 사업상의 이유가 전혀 없는 데도 말이에요.”
- 억양. “제가 영어를 구사할 때 억양이 있다는 이유로 제 고용주가 저를 불공평하게 대하고 있어요. 제 동료와 고객은 제가 말하는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데도 말이에요.”
- 보복. “제가 직장에서 경험한 괴롭힘에 대해 항의했더니 제 고용주가 저를 이민 당국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했어요.”
- 이민 문의. 고용주는 연방 이민법의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지원자 또는 근로자의 이민 상태를 조사해서는 안 됩니다.
- 시민권 요건. 차별을 위한 구실이나 출생 국가 또는 혈통에 대한 차별 목적 또는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시민권 요건은 불법입니다.
- 이민, 시민권 및 고용 내 언어 문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캘리포니아주 규정집(California Code of Regulations), 타이틀 2, 섹션 11028 을 통해 확인하세요.

불법적인 고용 차별을 받았다면, 소급 임금, 선불, 복직 및 기타 구제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www.calcivilrights.ca.gov/employment/ 에서 확인하세요.

사업장

소매점, 식당, 병원 및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같은 모든 종류의 사업장에서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이민자는 모국어, 이민 상태 및 시민권뿐만 아니라 인종, 종족, 혈통, 출신 국가, 성별, 성적

캘리포니아는 이민자의 민권을 보호합니다



Civil Rights
Department
STATE OF CALIFORNIA

안내 자료

성향, 성 정체성, 장애, 종교 및 기타 특성에 의해 받는 차별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차별 예시:

- “철물점에서 제가 합법적 이민자임을 증명할 수 없으면 제게 기계를 빌려주지 않겠다고 했어요.”
- “식당에서 우리가 미국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저와 제 가족에게 서비스를 거부했어요.”
- “병원에서 제가 시민이나 합법적인 이민자인지 확신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다른 환자보다 저를 지나치게 오래 기다리게 했어요.”

사업장으로부터 불법적인 차별을 받았다면, \$4,000 정도의 피해 보상을 포함한 구제책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www.calcivilrights.ca.gov/unruh/에서 확인하세요.

주택

인종, 종족, 혈통, 출신 국가, 성별, 성적 성향, 성 정체성, 장애, 종교, 수입원 및 기타 사유에 의한 퇴거, 아파트 거절, 더 높은 임대료 부과, 보수 거절 및 기타 유형의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주택이 사업장으로 인정된다면, 시민권, 이민 상태, 모국어와 관련된 주택 차별에 대해서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차별 예시

-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를 운영하는 관리 회사가 아파트를 나가지 않으면 제가 허가증이 없다는 것을 이민 당국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했어요.”
- “집주인이 제가 미국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게 광고 내용보다 더 높은 임대료를 요구했어요.”
- “새로운 공동주택단지가 세대를 분양하고 있는데 제가 미국 시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청서 제공을 거부했어요.”
- “부동산업자 사무실에서 제가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동산을 보여주길 거부했어요.”

불법적인 주택 차별을 받았다면, 거부당한 주택 출입, 부대비용 및 기타 구제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www.calcivilrights.ca.gov/housing/에서 확인하세요.

편견에 기반한 폭력

귀하 및 귀하의 가족과 부동산에 대한 폭력이나 폭력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인종, 종족, 혈통, 출신 국가, 성별, 성적 성향, 성 정체성, 장애, 종교, 시민권, 모국어, 이민 상황 및 기타 특성에 의해 발생된 폭력 및 폭력 위협은 “혐오 범죄” 또는 “편견에 기반한 폭력”으로 간주됩니다.

편견에 기반한 폭력 예시

- “낮선 사람이 제게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라며 침을 뱉고 소리를 질렀어요.”
- “제 동료가 제가 영어를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제 차를 긁어냈어요.”
- “제 이웃이 인종 차별적인 말을 외치며 저를 때리려 했어요.”

편견에 기반한 폭력으로 피해를 보았다면, 경찰서에 갈 수 있습니다. CRD와 함께 민사 소송 역시 제기할 수 있으며, 접근 금지 명령, 고통을 받은 부분에 대한 피해 보상을 포함하는 구제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www.calcivilrights.ca.gov/hateviolence/에서 확인하세요.

캘리포니아주에서 관리하거나 지원하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

캘리포니아주에서 운영하거나 정부의 지원을 받는 모든 프로그램 및 서비스는 특정 민권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일부가 모든 이민자에게 이용 가능하지 않을

캘리포니아는 이민자의 민권을 보호합니다



Civil Rights
Department
STATE OF CALIFORNIA

안내 자료

수도 있으나, 이는 인종, 종족, 혈통, 출신 국가, 성별, 성적 성향, 성 정체성, 장애, 종교 및 기타 특성에 의한 평가기준으로 신청자를 차별하거나 혜택을 준 것이 아닙니다.

불법 차별 예시

- “제가 어려움에 처한 젊은 엄마와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에 적합했음에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에서 제 종족을 문제 삼으며 저를 내쫓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의 금전적 지원을 받았습니다.”
- “제 아이가 다니는 공립 학교에서 제 아이들의 혈통을 이유로 스포츠 특별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 “메디칼(Medi-Cal)을 취급하는 병원에서 제가 다른 나라 출신이라는 이유로 저를 불공평하게 대했습니다.”

불법적으로 차별을 가하는 모든 정부 지원 프로그램 및 활동은 정부 지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잃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차별을 당했다면 다른 구제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www.calcivilrights.ca.gov/statefundedprograms/에서 확인하세요.

인신매매

캘리포니아 법은 이민 상태에 상관없이 상업적 성착취 또는 강제 노동을 목적으로 폭력, 사기 또는 강압을 통해 인간을 착취하는 인신매매로부터 모두를 보호합니다. 지원자 또는 근로자의 출신 국가를 기반으로 하여 고용 강요 또는 부정적인 처우를 목적으로 폭력, 사기 또는 강압을 사용하는 것은 고용주나 기타 해당 독립체의 불법적인 고용 관행입니다.

또한 인신매매 또는 기타 수많은 범죄의 피해자라면, 그러한 범죄를 기소하기 위해 법 집행에 협력하는 경우 U비자 또는 T비자의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www.calcivilrights.ca.gov/humantrafficking/에서 확인하세요.

차별을 당했다고 생각되는 경우, **CRD**에 연락 바랍니다.

민원 제기

민권 부서

calcivilrights.ca.gov/complaintprocess

수신자 부담: 800.884.1684

TTY: 800.700.2320

합리적인 수준의 편의 제공이 필요한 장애가 있는 경우 CRD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위 연락처로 편의 제공을 문의해주시요. 청각 장애, 난청 또는 언어 장애가 있는 경우, 캘리포니아 중계 서비스 (711) 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